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179
----------	------

2021년 2월 25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1년 2월 5일, 정진술 의원

나. 회부일자: 2021년 2월 9일

다. 상정일자: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21년 2월 25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정진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2020년 12월 9일 「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함에 따라 ‘환경보전 계획’이 ‘환경계획’으로 변경되었으므로, 조례의 문구를 이와 같이 수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‘환경보전 계획’ 용어를 ‘환경계획’으로 변경함(안 제18조제4항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환경보전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## 4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환경정책기본법」 개정('20.12월)에 따라 기존의 '환경보전 계획'이라는 용어를 '환경계획'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기존 법률 제4조 (총칙)에서 규정하고 있는 '환경보전계획'을 '환경계획'으로 수정한 것으로, 기존의 '환경보전계획'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획들을 망라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(제14조),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(제17조), 시·도 환경보전계획(제18조), 시·군·구 환경보전계획(제19조) 등이 이에 포함됨.

동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국가 및 지자체의 '환경보전계획'들이 자연, 대기, 수질과 같은 환경보전 대상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, 향후에는 환경보전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환경이슈에 대한 대응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'환경계획'으로 확장·발전시키고자 한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##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환경보전계획 등”을 “환경계획 등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“(환경보전 계획)”을 “(환경계획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환경보전계획(이하 “환경보전계획”)”을 “환경계획(이하 “환경계획”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“환경보전 계획”을 각각 “환경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환경보전계획”을 “환경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환경보전 계획”을 “환경계획”으로 한다.

제26조의2제2항제1호 중 “환경보전계획”을 “환경계획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5항 중 “환경보전계획”을 “환경계획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2장 환경보전계획 등</b></p> <p>제11조(환경보전계획) ① 서울특별시 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<u>환경보전계획</u> (이하 “<u>환경보전계획</u>”이라 한다)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환경보전 계획</u>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<u>환경보전 계획</u>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시장은 <u>환경보전계획</u>을 수립할 때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녹색서울 시민위원회, 자치구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.</p> <p>⑤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<u>환경보전 계획</u>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제26조의2(환경보전에 관한 자문) ① (생략)</p> <p>②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1. 제11조제1항에 따른 <u>환경보전계획</u>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p> <p>2.·3.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2장 환경계획 등</b></p> <p>제11조(환경계획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환경계획</u>(이하 “<u>환경계획</u>”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환경계획</u>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환경계획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--- <u>환경계획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<u>환경계획</u>----- -----.</p> <p>제26조의2(환경보전에 관한 자문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환경계획</u>----- 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